

행정 명령

올버니, 브롱크스, 컬럼비아, 그린, 델라웨어, 더치스, 킹스, 나소, 뉴욕, 오렌지, 오체고, 퍼트넘, 퀸즈, 리치먼드, 렌셀러, 록랜드, 쇼하리, 스키넥터디, 서퍽, 설리번, 얼스터, 웨스트체스터 및 인접 카운티들에 대한 재난 비상사태 선언

2026년 2월 22일부터 계속하여 노이스터가 발생하여 올버니, 브롱스, 컬럼비아, 그린, 델라웨어, 더치스, 킹스, 나소, 뉴욕, 오렌지, 오체고, 퍼트넘, 퀸즈, 렌셀러, 리치먼드, 록랜드, 쇼하리, 스키넥터디, 서퍽, 설리번, 얼스터, 웨스트체스터 및 인접 카운티 전역의 대중교통, 공공 서비스, 공중보건 및 공공안전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폭풍은 많은 눈, 강풍, 눈보라 및 해안 홍수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도로 폐쇄, 교통 혼란, 광범위한 정전, 공공 및 사유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중 보건과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부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 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임박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2026년 2월 22일부터 올버니, 브롱크스, 컬럼비아, 그린, 델라웨어, 더치스, 킹스, 나소, 뉴욕, 오렌지, 오체고, 퍼트넘, 퀸즈, 리치먼드, 렌셀러, 록랜드, 쇼하리, 스키넥터디, 서퍽, 설리번, 얼스터, 웨스트체스터 및 인접 카운티에서 주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6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9조 제2-B항에 따라, 본인은 공공 보건, 안전 보호가 필요해짐에 따라 뉴욕주 종합 비상 운영 계획(Stat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의 시행을 명령하고, 2026년 2월 22일부터 필요 시 주정부 기관과 미국 적십자사에 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지방 정부와 개인이 이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합니다.

추가로, 이 선포는 49 CFR 395.2항 및 395.5항에 따라 구제를 제공하는 49 CFR 390.23(b) 요건을 만족시킵니다. 유틸리티 전력 복구 요원들을 뉴욕주로 신속히 배치하기 위해서는 연방 자동차 운송업체 근무 시간 규정에서의 이러한 면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법률이나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규정 또는 그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관한 법 제2-B조 29-a절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이러한 법률,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준수가 재난 위기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본인은 이에 본 행정 명령 발효일로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 기간 동안 다음 법률을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수정합니다.

-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97-G장: 재난 위기에 대응 및 복구에 있어서 음식물, 물자, 서비스, 장비의 구매, 또는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 개인, 기타 민간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화된 서비스를 공급 또는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일반 지방 자치 단체 법률 제5-A조, 표준 고지 및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 및 장비를 포함한 소모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주 재정법 112장: 주 헌법의 제1장 제V조에 모순이 없는 범위 및 주정부 계약에 대한 추가 작업, 장소, 시간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상품, 용역,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주 재정법 조항 163 및 경제개발법 조항 4-C.
- 공공건물법 제9조 및 경제개발법 제4-C조: 1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긴급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고속도로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긴급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 다른 관할구에 타당하게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차량 등록, 장비 및 규격 요구사항으로부터의 면제가 그러한 차량이 긴급 사태의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차량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375, 385 및 401조,

또한, 본인은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수정합니다.

도로, 고속도로 및 거리에서 교통 및 차량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부법 조항 24, 고속도로법 조항 104 및 346, 차량교통법 조항 1602, 1630, 1640, 1650 및 1660, 운송법 조항 14(16), 벌리지법 조항 6-602 및 17-1706, 일반도시법 조항 20(32), 2급도시법 조항 91, 그리고 뉴욕주 규정집 타이틀 21의 조항 107.1.

또한,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석방 취소 절차와 관련된 심리의 완료와 관련하여 행정법 제259-i조 제3항 및 뉴욕주 법규, 규칙 및 규정 제9편 제8004조 및 제8005조의 해당 조항의 모든 기간을 7일 연장하는 효과로 일시 정지하거나 수정합니다.

2026년 2월 21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관